



2027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Q&A

【일반대학생용】



응시 자격

Q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가요?

A - 이수학점 기준과 전적대학 백분위 성적 평균 80%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
Q 대학을 휴학 중인 경우에도 편입학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응시 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응시 가능합니다.

Q 학사학위 취득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A - 학력기준(2학년 4학기 이상)은 충족, 성적기준(80점)만 충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.

Q 전적대학에서 미복학으로 제적이 되었는데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응시 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응시 가능합니다. 미등록·미복학·자퇴 동일합니다.

Q 출신학교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가요?

A - 지역·출신학교 등은 모집상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이수 학점 등

Q 학점 관련 선수과목 지정 여부 및 특정 전공, 교양 등 미인정 과목이 있는가요?

A - 이수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합니다.

Q 전적대학 수료요건이 경찰대학 응시자격(63학점 이수)과 다른 경우에는?

[예시] 전적대학의 2학년 4학기 수료요건이 70학점 이상인데 2년간 63학점만 이수한 경우

A - 63학점 이상과 전적대학의 학칙에 따른 **2학년 수료요건(70학점 이상)까지 동시에 충족**해야 합니다. 위 예시에 해당하는 학생은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Q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가요?

A - 전문대학은 **전문학사를 취득**하거나 **취득 예정**이면 응시 가능합니다.

Q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만으로는 70학점이 안되고,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 중 일부를 인정받은 학점까지 합해야 70학점이 됩니다. 응시할 수 있나요?

A -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의 양과 상관없이, **학점은행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에 70학점이상이 기재된다면 응시**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전적대학 성적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을 **임의로 합산**할 수는 없습니다.

Q A대학 1년 2학기 수료 후, B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여 총 2학년 4학기 6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가요?

A - B대학에서 2학년 4학기를 수료하였다면 응시 가능합니다.

- 다만, A대학과 B대학 각각의 성적 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.

Q 아직 2학년 수료가 되지 않았는데, 응시 가능한가요?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?

A - 2학년 4학기 수료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며 **수료예정증명서**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- 현 소속대학에서 수료예정증명서 미발급 시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중 1부와 함께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'수료예정확인서'를 출력, 직인을 받아 제출바랍니다.

전적대학 성적 등

Q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합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 -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각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의 백분위 환산점수로 판단합니다.

Q 전적대학 성적평균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유불리가 있는가요?

A - 성적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.

Q 성적(80점) 기준일이 언제인가요?

A -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한 최종학기 성적으로 반영합니다.

- 단, 예외적으로 **학력 예정자**는(2학년 4학기, 전문학사 졸업, 학점은행제 70학점) 지원 시 성적이 80점이 되지 않아도 학력 증명서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은 가능하나, 추후 최종 학력·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학기 성적이 응시자격(80점)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됩니다.

Q 전적대학에서 3학년까지 다녔는데 2학년 4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이 되는데 3학년까지의 성적을 합하면 80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2학년 4학기까지의 성적으로만 응시할 수 없나요?

A - 최종학기를 포함한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기재된 증명서를 통해 성적을 확인하므로 이수한 최종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이 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

Q 외국대학의 학점 기준과 성적증명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외국대학도 국내대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성적증명은 100점 만점 환산기준 GPA(Grade Point Average)를 제출하면 됩니다.

- 단,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경찰대학 편입생 선발 사정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
학점은행제 등

Q 학점은행제 학사 기준 70학점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?

- A** - 2026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등록한 학점까지 인정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 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수업을 듣는 중이라면 현재까지 이수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.

Q 학위를 취득하였으나, 성적평균 80점이 되지 않아 학점은행제에서 추가 이수하여 합산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되었습니다.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나요?

- A** -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각각 성적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.
-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 중 어느 하나라도 80점 미만이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Q 전적대학을 자퇴 후 전적대학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였으나,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도 70학점 이상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A** - 학점은행제에 전적대학의 학점을 등록하여 일부라도 인정받았다면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각각 성적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하며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 중 어느 하나라도 80점 미만이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Q 전적대학 1개 학년 수료 후 전적대학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지 않고, 학점은행제로만 최종 7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. 서류는 전적대학 것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?

- A** - 학점은행제 최종성적증명서만으로 70학점 인정받았으니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?

A -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24.)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자격증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, 자격증으로 학점 일부를 취득한 경우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?

A - 독학사 과정별 시험 합격 및 자격증의 경우 **합격 여부만 확인하여 학점인정**을 하므로 성적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고,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나머지 산출된 성적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,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- 독학사,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 요건 (80점)에 관계없이 **지원가능합니다.**

Q 학점은행제 70학점은 전문학사도 해당하나요?

A - 모집요강 응시자격의 세부 학력 기준과 같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이 아닌 **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만**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편입학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독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, **최종 성적 평균 80점 이상**을 요구합니다.

Q 독학사 시험 결과발표 전인데도 학점 반영이 되나요?

A -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24.)까지 **합격 여부**가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독학사 합격 학점을 등록 예정이라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독학사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.

원서접수

Q 원서접수 전형료는 어떻게 되나요?(모집요강 5페이지 참조)

전형	단계별	전형료	비고
일반대학생	필기시험	50,000원	응시인원 전체
재직경찰관	1단계(객관평가)	10,000원	응시인원 전체
	2단계(필기시험)	40,000원	추천인원 175명

- 재직경찰관의 경우 원서접수 시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하고,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175명만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합니다.

※ 2단계 전형료 납부방법 및 결제사이트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에정(재직경찰관 추천자 발표 ('26. 10. 2)이후) 2단계 전형료를 정한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응시 불가

Q [원서접수 시] 작성 및 업로드 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?(모집요강 6페이지 참조)

- A**
1. 학업계획서 : 원서접수 기간 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
 2. 온라인 업로드 서류 : 원서접수 후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스캔 후 파일명에 맞게 업로드
 - 일반대학생 :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
 - 재직경찰관 :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, 영어성적표

Q 응시번호는 언제 부여되나요?

- A**
- 원서접수 후 부여되는 번호는 접수번호입니다.
 - 응시번호는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번호로 원서접수 마감 후 부여되며 '26. 10. 16. 10:00 이후 응시표 출력과 응시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입학사정

Q 1차 시험에서 3배수 안에 들면 신체·적성·체력검사 및 면접에 모두 참여하는가요?

- A** - 1차 시험에서 3배수 안에 선발될 경우 모든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.
- 신체검사는 합격·불합격 결정합니다.
 - 체력검사는 최종사정에 20% 반영되며, 순환식 체력검사 기준 미달 시 불합격처리됩니다.
 - 적성검사는 합격·불합격이 없으며,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(경찰공무원 채용과 동일)합니다.

Q 면접 방식과 예시문항이 있는가요?

- A** - 면접은 3가지 평가(인성·적격성 면접, 창의·논리성 면접, 집단토론 면접)로 구성되며, 예시문항은 비공개입니다.

Q 적성검사 평가요소와 반영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가요?

- A** - 적성검사 항목은 총 3개 검사, 4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적성검사는 합격, 불합격이 없으며,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.

Q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** -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60%, 체력검사 20%, 면접시험 20%를 합산하여,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.

Q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** - 동점자가 있는 경우 '1차시험 성적 → 면접시험 성적 → 체력시험 성적'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 면접시험 성적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체력시험의 기록 우수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.

학적 등

Q 현재 4학년 대학을 휴학한 상태입니다. 편입학에 응시하기 전에 자퇴를 해야 하나요?

A - 동시에 두 대학에 학적이 등록되면 이중 등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 후 학기개시일 이전에 이중등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.

Q 최종합격한 후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- 최종합격하여 이미 등록을 한 후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,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**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**해야 합니다.

Q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최종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 -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는 입학 전까지 학교에서 **지정한 기한 내에 최종 학력증명서·성적 증명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합격 후에라도 낙제 또는 졸업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.

학교생활 등

Q 편입생들은 행정학과와 법학과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?

A - 편입생 전형은 학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합니다. (신입생도 동일)
- 입학 후 학과 선택 시 학과별 지원자가 모집 전형별 학과 정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 정원별 입학서열로 결정하며 모집 전형별 학과 정원은 경찰대학 학칙 별표2*와 같습니다.

* 「경찰대학 홈페이지 → 경찰대학 법령집」에서 확인가능

Q 학비, 기숙사비는 어떻게 되나요?

A - 경찰대학생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기숙사비 등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.

Q 학교 재학 중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?

A -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'경찰 공무원 등의 봉급표'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기타

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의 호봉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?

A -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「경찰대학설치법」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 기간 50%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(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)합니다.
- 편입생의 경우 교육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의 호봉이 합산됩니다.

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?

A -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,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